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1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이용선·황 희·김남근

박홍근 · 복기왕 · 윤건영

고민정 • 이재정 • 김문수

오세희 • 이기헌 • 이재강

박희승 · 조계워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 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협의회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탁기업협의회에 참여한 수탁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임.

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비해 약한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보완해 주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 나. 계속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은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정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 고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함(안 제21조의4 신설).
- 다.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가 해당 위탁기업에 대하여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 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의 5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탁기업과"를 "권익보호 및 위탁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1982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약정의 갱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기간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정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탁기업이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수탁기업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조건을 수탁기업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탁기업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위탁기업이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탁기업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탁기업이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약정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수탁기업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약정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 전의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다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기업이 약정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

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의5(수탁기업협의회등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① 특정 위탁기업과 약정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수탁기업 또는 그 수탁기업으로만구성되어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수탁기업협의회는 그 위탁기업에 대하여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복수의 수탁기업협의회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위탁기업은 다수의 수탁기업으로 구성된 수탁기업협의회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는 수탁·위탁거래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수탁기업협의회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제4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 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 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 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 보호 및 위탁기업과-----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 · 지역별 · 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 성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업협의 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 <신 설> 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 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 부하거나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법률 제19821호 대ㆍ중소기업 상 법률 제19821호 대ㆍ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신 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④·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제21조의4(약정의 갱신 등)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적 수 탁 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 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수탁 위 탁거래에 관한 약정(이하 "약 정"이라 한다) 기간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 정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탁기업이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수탁기업에게 통상적으 로 적용되는 약정조건을 수 탁기업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조공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탁기업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위탁기업이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탁기업에게 거절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탁기업이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까지 사이에 수탁기업에게 조 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약정 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 전의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 다

<신 설>

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기업이 약정이 만료 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 를 제기하거나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5(수탁기업협의회등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① 특정 위탁기업과 약정을 체결·유지 하고 있는 수탁기업 또는 그 수탁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제17 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수탁기 업협의회는 그 위탁기업에 대 하여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 (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 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 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복수의 수탁기업협의회가 협의 를 요청할 경우 위탁기업은 다 수의 수탁기업으로 구성된 수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저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4. (생 략) <u><신 설></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탁기업협의회와 우선적으로	협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와 관	련
하여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	업
협의회는 수탁・위탁거래의	본
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	건
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부당	하
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
<u>여서는 아니 된다.</u>	
25조(준수사항) ①	
,	
1. ~ 14. (현행과 같음)	
15.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ㆍ	가
입・활동 등을 이유로 수	탁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거	나
수탁기업협의회에 가입 또	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	건
으로 수탁 위탁거래에 관	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2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
	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